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을 개선하고,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개선(안 제11조제4항제3호)

- 피해 방지단 추천방식을 읍면장 추천에서 야생생물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서 추천으로 변경

나. 피해보상 제외 조항 삭제(안 제9조제3호, 제12조제1호 및 제2호)

- 의료비 부담금 10만원, 피해액 10만원, 피해면적 165㎡ 미만 조항 삭제

다. 보상금 지급절차 개선 및 삭제(안 제6조제1항, 제14조1항제1호 및 제2항, 제18조제1항)

-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삭제

라.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 기재(별지제1호～제6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「개인정보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10.22~11.11)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마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(안)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을 개선하고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- 안 제11조제4항제3호의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개선
- 안 제9조제3호,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피해보상 제외 조항 삭제
- 안 제6조제1항, 제14조1항제1호 및 제2항, 제18조제1항에 보상금 지급절차 개선 및 삭제
- 안 별지서식 제1호~제6호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일부 개정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(야영 데크)이 규모가 작아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지하고, 정부규제개혁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휴양림의 입장제한이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“야영장” 운영 규정 삭제

- 안 제2조제2항,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제2호, 제7조제1항, 별표 1)

○ 자연휴양림 위약금 전액 환급 처리기준 변경(별표 2)
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→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

○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 폐지(안 제11조,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2015. 11.4~11.23 (의견 없음.)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마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(안)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(야영 데크)이 장소가 협소하고 사실상 이용이 불가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정부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휴양림의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- 안 제2조제2항,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제2호, 제7조제1항, 제6조제1항「별표1」내용 중에서 “야영장” 운영 규정 삭제
- 안 제9조제2항「별표2」“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기준” 중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를 4일전까지로 환급요건 완화
- 안 제11조(입장제한), 제12조(행위제한) 규정을 정부규제 개혁 방침에 따라 폐지하는 것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